KOSHA GUIDE

C - 75 - 2013

- (15) 경사면 식재작업 시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,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16) 강풍 시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풍속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고,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17) 충전전로에 인근 작업 시 크레인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 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4.6 지주설치작업

- (1) 지주목 설치 및 가지치기 작업은 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
- (2) 지주는 못 박기, 철선 결박 등을 튼튼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결박하는 부위의 철선은 완충재를 대어 수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고무판을 대주고 끈으로 묶음으로써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3) 삼각형 지주 등은 수목의 교착하는 부분에 2곳 이상 결속하여야 한다. 또한 강풍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여 수목 활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지주 적재 시에는 근로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재를 정리하고, 통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.